



IFRS 적용실무 해설 (8)

이 자료는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의 각 주제별 담당자들이 해당 이슈별로 사례를 정리한 내용이며, 향후 2~3년 간 IFRS 도입시점까지 이슈를 주제별로 소개할 계획이다. <편집자 註>

1. 공동지배여부의 판단

K사는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중국에 A사를 설립 하였다. 설립 당시 K사는 동일 그룹에 속하는 동일 업종의 한국기업 K1사 및 K2사와 중국의 유명 동일업종회사인 C사와 합작계약을 맺고, A사에 공동 출자하였다. 또한 K, C, K1, K2사의 주주협약에 따르면 각 사는 A사의 이사회 구성원 선임 및 의사 결정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있다.

	K사	C사	K1사	K2사
지분율	45%	25%	20%	10%
이사회 선임권	3인	2인	1인	1인

주요 의사결정 사항:

- 1) 모든 이사회 구성원의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사항
 - 정관 수정, 해산, 합병 및 분할
 - 발행주식수의 증가, 감소, 대외지점 설치
 - 사의 청산승인, 청산 절차의 결정
- 2) 이사회 구성원의 5인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
 - 고정자산의 구매 및 원재료 구매를 포함한 연간사업계획 승인
 - 재무예산안 및 결산안 승인, 재무제표 승인
 - 자산매각 승인

- A사의 대외보증, 담보제공, 질권설정 및 인 사정책의 승인
- 일정금액 이상의 차입의 승인
- CFO, COO 및 기타고위 경영진의 임용, 해 임 및 급여의 결정
- 제품가격의 주요한 변동

3) 기타사항은 참석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로 의 결함.

한편, K사의 경영진은 K1사 및 K2사의 대주주 가 K사의 대주주로 서로 계열사 관계에 있으므로, K사의 이사회 3인과 K사에 우호적일 것으로 추정 되는 K1사 및 K2사의 이사회 구성원 총 2인을 고 려할 때, 실질적으로 A사를 지배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K사의 주장은 타당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서 제1027호 “연결재무제표와 별도재무제표”에서는 지배력의 정의를 그리고 제1028 호 “관계기업투자” 및 제1031호 “조인트벤처 투자지분”에서는 중대한 영향력 및 공동지배의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처음 적용하는 기업들은 전환일의 개시 K-IFRS재무상태표를 준비하면서 보유 지분에 대하여 지배력, 공동지배, 또는 중대한 영향력 중 어떤 것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지배력이란 경제적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통상 지배기업이 직접으로 또는 종속기업을 통하여 간접으로 지분율(의결권이 부여된)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다면 반증이 없는 한 지배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과반의 이사회 구성원의 선임권한 등도 지배력이 존재하는 증거로 간주된다(기준서 제1027호 문단 13). 상기의 사례에서 K의 경영진은 K와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K1사와 K2사의 영향력을 A사에 대한 지배력 판단 시 포함하고자 하나 K1사와 K2사는 K사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아니므로, 이러한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K1사 및 K2사가 K사의 관계기업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K-IFRS에서 지배력의 판단 시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을 통한 영향력만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속기업이 아니라면 지배와 같은 영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기업의 영향력을 지배력 여부의 판단에 고려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상기 사례에서 K1사 및 K2사의 이사회 구성원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2)에서 나열된 주요 재무, 영업정책이 5인 이상의 동의를 요하므로, K사는 A사의 주요 재무,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 1)의 만장일치를 요하는 사항은 회사의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주주의 중요한 참여적 권리라고도 불림)이라기 보다는 비정상적인 사안에 대한 주주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성격(주주의 보호적 권리라고도 불림)의 성격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지배력의 판단 시 고려하지 않았음)

이 경우, 공동지배가 성립할 것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 기준서 제1031호에 따르면 공동지배는 계약상의 합의에 의하여 주요 재무,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다른 참여자와 공유하는 경우에 존재한다. 상기의 경우 주요 재무, 영업정책으로 볼 수 있는 2)의 항목들의 결정에는 최소 5인의 동의를 요구된다. K사는 3인의

이사회 구성원의 임명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독자적으로는 이러한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 또한, K사와 C사가 동의한다면 2)의 주요 의사결정사항이 통과될 수 있으므로, K사와 C사 사이에 공동지배가 존재한다고 간주하기 쉬우나, 이는 올바른 판단이 아니다. K사는 C사의 동의 없이도 K1사와 K2사의 동의만으로도 주요 재무, 영업정책을 통과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배가 특정 투자자 사이에 공유된다고 볼 수 없고, 여러 경우의 수가 존재하므로, 공동지배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이 경우 K사는 C사에 대하여 중대한 영향력만이 인정될 것이며, 지분법으로 보유지분을 회계처리 해야 된다.

한국의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도 기준서 제18호에서 조인트벤처 투자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지배의 정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상의 정의와 다르지 않다. 다만, 해석상 또는 실무 적용상 다양한 판단이 존재해 왔을 수 있으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 전환 시 공동지배 여부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공동지배를 판단할 경우 계약에 의한 합의가 존재하는 지가 주요 고려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러한 계약에는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사안, 이사회과반의 동의를 요구하는 사안 등 여러 요소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어떤 의사결정 사안이 주요 재무, 영업정책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이 정책을 회사가 단독으로 결정하는지, 다른 투자자와의 합의가 반드시 요구되는지에 따라 지배, 공동지배 여부가 판단될 것이며,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영향력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준비시간을 두고 회사의 약정 내용, 영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지배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작성 :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박상은 회계사



2. 비화폐성자산에 대한 이연법인세 - 기능통화와 세무상 통화가 다른 경우

K사는 한국 원화(KRW)가 기능통화이자 표시통 화이고, 한국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중국에 해외 지점을 두고 있다. 중국 지점의 영업도 한국의 원화 가 기능통화이나 중국 현지에서의 법인세는 중국 위안화(CNY)로 계산된다.

K사는 20X8년 1월 1일에 540위안의 기계장치 를 취득하였다. 취득일의 환율은 CNY1 = KRW 200 이었다. 취득한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이 고 잔존가치는 0으로 정액법으로 상각되며, 역사적 원가로 측정된다. 세무상으로도 해당 자산은 잔존 가치 없이 5년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된다. 20X8년 12월 31일의 환율은 CNY1 = KRW 180이었으 며, 세율은 30%이다.

해외 지점의 기계장치와 관련하여 환율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 일시적차이에 대해 K사는 어떤 방법으 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를 인식할 것인가?

역사적원가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항목은 거래일의 환 율로 환산한 기능통화 금액으로 인식(기준서 제1021호 “환율변동효과”)되므로 회계상 동 기계장치는 취득일의 환율에 의해 기능통화인 한국 원화로 환산되고 그 금액 을 원가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한다. 그러나, 미래의 과세 소득 계산은 중국의 위안화로 이루어질 것이며, 현재 시 점에서 과세소득에서 차감될 금액을 가장 잘 측정할 수 있는 환율은 기말환율이다. 따라서 세무기준액은 기말 환율로 측정된다. 이렇게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에 적 용되는 환율이 다르므로 환율의 변동은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게 된다.

기준서 제 1012호 “법인세” 문단 41에서는 기업의 과 세소득(또는 세무상 결손금)이 회사의 기능통화가 아닌 통화로 결정된다면 환율의 변동은 이연법인세부채 또는 (자산성이 있는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해야 하는 일시적차이가 발생하며 그 결과인 이연법인세는 당기손 익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상기 사례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기계장치의 일시적 차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세무상보고통화 CNY	환 율	기능통화 KRW
장부금액 :			
원가	540	@ KRW = 1/200	108,000
감가상각누계액	(108)		(21,600)
순장부금액	432		86,400
세무기준액:			
원가	540		
세무상 감가상각누계액	(108)		
세무기준액	432	@ KRW = 1/180	77,760
일시적차이	-		8,640
이연법인세부채 (*30%)			2,592

세무상 보고통화인 위안화로 표시된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과 세무기준액은 서로 같지만 취득일과 기말의 환 율이 변동함에 따라 기능통화로 표시된 장부금액과 세 무기준액에는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 일시적차이 KRW 8,640에 대해 K사는 KRW 2,592(8,640*30%)의 이 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작성 :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이윤경 회계사

3. 금융보증계약

A회사는 B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B회사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그 대여한 금액을 상환 받는 계약을 C회사와 체결하였다. 동 계약에 따라 C회사는 B회사의 부도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A회사가 손실을 입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 계약에 대해 C회사는 어떻게 회계처리 하여야 하는가?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이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39호 문단 9) 이러한 금융보증계약은 보증, 신용장, 신용위험이전계약, 보험계약 등 다양한 법적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법적 형식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금융보증계약 발행자의 회계처리(주1)는 다음과 같다.

- (1) 최초인식 : 공정가치로 인식 (금융보증계약이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발행된다면, 당해 계약의 최초 공정가치는 반증이 없는 한 수취한 대가와 동일할 것이다.)
- (2) 후속측정 :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한다. (주2)
 - (i)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 (ii) 최초 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주1) 선택적 적용사항 : 기준서 제39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보증계약의 특성은 IFRS 4(보험계약에 대한 기

준서)에 정의된 보험계약의 특성과도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FRS 4를 제정하면서,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가 당해 계약을 보험계약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사전에 명백히 하고 보험계약에 적용 가능한 회계처리를 하였다면, IFRS 4에 따라 회계처리 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금융보증계약의 발행자는 각 계약 별로 회계처리기준을 선택할 수 있으나, 선택한 이후에는 변경할 수 없다.

(주2) 금융보증계약은 일종의 신용을 제공해 주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대가는 그 보증기간 동안정액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함. 최초 인식액에서 상각누계액(누적수익인식액)을 차감한 금액보다 채무자의 재무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준서 제1037호에 의해 측정된 총당부채 금액이 더 클 경우에는 이러한 총당부채 금액으로 후속측정액이 결정될 것임.

한편, 신용관련 보증계약 중에는 보증대상자산에 관하여 지급기일에 채무자의 지급불이행으로 인한 위험과 손실을 부담하는 것을 지급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계약도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의 변동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계약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계약은 위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보증계약이 아니라, 기준서 제39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파생상품에 해당한다. 위 사례의 경우도 신용관련 보증을 제공한 C회사는 B회사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즉, B회사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는 채무자인 B회사가 그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여 채권자인 A회사가 손실을 입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따라서, 위 계약은 기준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금융보증계약에 해당되지 않으며, B회사의 신용상태를 그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용파생상품에 해당할 것이다. 

작성 : 삼일회계법인 IFRS Group 김수완 회계사